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해설(Ⅲ)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서기관 | 최 두 선

지난호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중 제74조 신기술·공법 변경등에 의한 절감사유가 제출된 공사의 설계변경관련 개선내용 까지 설명하였다 이번호에서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41 분할계약 적정성 상급기관 사후 보고제 도입(제77조)

종 전	개 정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공구나 구조물을 적 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 분이 용이하고 품질검토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 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동조문은 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상급기관 (감사부서)에 사후 보고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분할계약을 예방하고 분할을 통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할계약금지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예산서, 계획서, 품의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 으로나 물량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시공을 해서는 안됨을 명시 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점은 계획상의 단일사업뿐만 아니라 집행상 합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까지도 분할금지 대상사업 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2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일부 보완(제83조)

종 전	개 정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 · 감리 및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친다.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

동조문은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시 설계 · 감리 및 시공을 동시에 진행시킬 경우 기본적인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감리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본설계가 진행될 때까지 시공자가 대기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됨에 따라 감리 및 시공계약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본설계도면이 작성될 수 있는 시점인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감리 및 시공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이다.

43 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확대 등(제83조의2)

종 전	개 정
〈신 설〉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동조문은 대형공사(100억원 이상공사)에 적용하던 건설사업관리(CM)계약을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자치단체 공사 감리·감독·시공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종전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4조의 건설사업관리 계약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동 제도의 근거법령인 건산법과의 통일하였다.

※ 건산법·국가계약법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 지방계약법 :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종전 시행령제104조)

44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제90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90조(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0조(지체상금) ①----- ----- -----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동조문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매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차 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함에 따라 지체상금도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문화함으로써 종전 일부 발주자가 전체 계약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발생했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문으로 정하여 일부에서 발생하였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5 감리업체의 감리원 부당교체시 부정당업자제재 규정신설(제92조제1항제4의2호)

종 전	개 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u>〈신 설〉</u>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u>4의2.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u>

동조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예산만 낭비하거나 타당성용역의 부실로 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 제재근거 규정 마련한 것으로서 그동안 타당성조사 용역의 형식적 수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46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제92조제1항제6호)

종 전	개 정
6.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자	6.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동조문은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재사유를 추가하여 적격심사를 위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업지지서,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예 : 공고 및 계약서에 2002년산 이상 차량 임차를 명시 했음에도 2001년산 차량으로 임차한 경우 제재대상이 됨

이는 현행 경쟁 입찰이 활성화 되면서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발주청의 정당한 이행요구가 구속력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7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사유 추가(제 92조제1항제10호)

증 전	개 정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u>설계자문위원회의</u>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0.----- ----- ----- ----- <u>-----설계자문위원회의</u>의 위원,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동조문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및 협상에 의한 계약확대에 따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대한 뇌물제공 등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제사유를 추가하였다.

48 입찰불참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적용범위 일부조정(제92조제1항제11호)

종 전	개 정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u>입찰</u> 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1. ----- ----- <u>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u> <u>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u> <u>을 제외한다)</u> -----

동조문은 전자입찰의 경우 시스템 작동미숙 등에 따른 불참 등 과실에 의한 입찰 불참의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전자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49]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포기자에 대한 제재범위 명확화(제92조제1항제14호)

종 전	개 정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동조문은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사유 명확화한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0] 최저가 낙찰제 계약포기에 대한 부정당제재 사유 추가(제92조제1항제14의2)

종 전	개 정
〈신 설〉	14의2.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동조문은 최저가입찰, 적격심사 입찰 등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심사서류만 제출하고 입찰담합 등을 위하여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입찰질서 확립하고자 하였다.

51] 감리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제92조제1항제17호)

종 전	개 정
〈신 설〉	17.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 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동조문은 감리원의 연속적 종사를 통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규정 마련하였다.

52 부정당업자제제 관련 내용보완(제92조 제10항)

종 전	개 정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조문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후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은 자와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도록 규정 보완하였다.

53 대형공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제95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95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95조(정의) ①----- -----. 1.----- -----300억----- 2.----- -----300억----- ----- -----.

동조문은 턴키·대안입찰은 100 억원이상('92 기준설정) 신규복합 공종공사에 대하여 발주가능 하였으나 물가상승율, 최근 발주규모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금액기준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 지역중소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동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 어려운 건설업체들에 대한 수주기회를 조금이나마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수 있다

54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 폐지(제95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95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대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10. (생 략)	제95조(정의) ①----- -----. 1.~2. (현행과 같음) ----- 3. ----- -----<u>실시설계서</u>----- ----- -----<u>같은 수준</u>----- -----<u>해당 실시설계서상의</u>----- -----<u>실시설계서상의</u>----- ----- -----<u>실시설계서상의</u>----- ----- -----<u>실시설계서상의</u>----- ----- 4.~10. (현행과 같음)

동조문은 기본설계에 대한 대안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고 대안입찰의 취지에 부적합하여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를 폐지하였다.

※ 턴키입찰방법에 비하면 기본 설계비만 낭비되는 것으로 기본설계대안입찰은 턴키입찰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5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 제외(제96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 ----- -----, 다만, 제43조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조문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턴키·대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 불필요함을 명시하고 입찰방법 심의기구를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하였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시범사업 관련공사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도입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의 경우 지방건설기술 심의 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가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 의기구 일원화를 통하여 대형공사입찰방법 결정에 대한 에 대한 투명성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56 대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심의 의뢰시기 조정(제96조제2항)

종 전	개 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 없이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 -----대안입찰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작성후----- -----.

동조문은 대안 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수행한 후에야 대안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입찰방법심의 의뢰시기를 현행 기본설계 작성 전에서 실시설계 작성 후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다.

57 일괄입찰(턴키)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제96조제3항)

종 전	개 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한다.

동조문은 일부 자치단체는 시·군·구 별(설계자문위원회)로 입찰방법을 심의를 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 발생함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시·도 로 일원화 하였다.

58 대안입찰시 공동수급체 참여 규정보완(제97조제1항 및 제2항)

종 전	개 정
제97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동조문은 턴키입찰참여시에는 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 등 요건과 설계를 위한 신고 등 요건 2가지를 충족하거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바,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대안입찰 참여자는 턴키입찰 참여시와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고,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일괄입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찰시 설계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 등 요건과 설계를 위한 신고 등 요건 2가지를 충족하거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만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59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 보완(제98조제2항 및 3항)

종 전	개 정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 2. (생략)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중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생략)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단서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동조문은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하고 문구를 보완한것이다.

60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규정 문구보완(제99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99조(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동조문은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적격 입찰자 선정요건을 이해가 용이하도록 문구 보완하였고 본문과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호로 규정한것이다.

61 턴키 · 대안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제99조제2항)

종 전	개 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 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동조문은 적격으로 통지된 턴키 · 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 업체 선정하였으나, 턴키 · 대안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1차 선정 경쟁자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 심사 통과업체를 6개 업체로 확대 한 것을 명시 하였다.

62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규정 보완 등(제99조제3항 내지 제8항)

종 전	개 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작성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로 대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안입찰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중에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98조제4항 및 제100조제2항·제5항의 규정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로서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 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조문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대안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원안입찰을 대상으로 한 낙찰자 결정규정 보완하기 위함이다.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후 낙찰자 결정하고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하도록 하였고 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규정(현행 제99조)과 대안의 채택 규정(현행 제102조)을 합치는 과정에서의 문구도 보완하였다.

63 턴키 · 대안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 등(제100조)

종 전	개 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u>〈단서 신설〉</u>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①----- ----- ----- -----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동조문은 턴키 · 대안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1차 선정 경쟁자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6개 업체로 확대하였고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에 의할 것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64 대안의 채택 및 낙찰자 선정 규정 정비(제102조)

종 전	개 정
제102조(대안의 채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안 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으로 대체하여 대안입찰금액을 조정한 후 제42조 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대안입찰금액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입찰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대안 중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수정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삭 제〉

동조문은 대안의 채택 규정(종전 제102조)을 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규정(종전 제99조)에 통합함에 따라 삭제한 것이다.

65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 근거 마련(제103조제2항)

종 전	개 정
제10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생략) <u>〈신설〉</u>	제10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동조문은 일괄입찰의 실시설계과정에서 민원이나 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 반영 등으로 기본설계와 다르게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금액 조정근거 마련하였고 계약체결 이전까지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실시설계의 추가·보완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66 건설사업관리 계약의 규정 정비(제104조)

종 전	개 정
제104조(건설사업관리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형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u>〈삭제〉</u>

동조문은 종전 100억원이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된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 관련조항 신설(제89조의2)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67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공사 축소(제108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 ----- ----- ----- -----.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u>50억원</u>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u>10억원</u> 이상)	1. ----- ----- <u>70억원</u> ----- <u>20억원</u> -----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u>30억원</u>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u>5억원</u> 이상)	2. ----- <u>50억원</u> ----- ----- <u>10억원</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동조문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는 있어 중·소규모 계약에는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발주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발주기간 단축하도록 하였다. 심의대상을 축소함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계약심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게 되었다

68 설계공모 · 기술제안 및 기술제안 입찰제도 도입(제9장)

종 전	개 정
〈신 설〉	제9장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신 설〉	제126조(적용대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당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신 설〉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설계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工期), 시공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에 따른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 설〉	제128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 제1항 · 제2항 단서 ·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 · 제2항 본문 ·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 전	개 정
〈신 설〉	제129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30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1조(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2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제안 적격으로 통지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 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신 설〉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27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종 전	개 정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세부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제안입찰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낙찰자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자료 외에 입찰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2조(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 시에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및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 전	개 정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33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4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시에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1. 가치평가 및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종 전	개 정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35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36조(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74조를 준용하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동조문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한 낙찰자결정방법(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 턴키·대안입찰외에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절차를 용약하면 아래와 같다.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절차

입찰 절차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입찰방법심의 ↓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실시설계 후 심의의뢰	○ 좌 동 - 기본설계전 심의의뢰 * 필요시 기본설계 후
입찰참가자격 ↓	○ 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자	○ 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자 ○ 설계용역업자
입찰서 등 제출 ↓	○ 입찰서 ○ 기술제안서 - 공사비절감방안 - 생애주기비용 - 공기단축방안 - 공사관리, 사업수행조직 ○ 산출내역서(직접작성)	○ 좌 동 ○ 좌 동 ○ 해당사항 없음
지기위 등 심의 ↓	○ 기술제안서 * 설계자문회의 심의 가능	○ 기술제안서 ○ 실시설계서(설계적격자 제출) * 설계자문회의 심의 가능
낙찰자 선정	○ 기술제안 상위 6개업체 선정 ↓ ○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가중치 방식 기술조정점수방식 가격조정가격방식 ↓ ○ 낙찰자 선정	○ 기술제안 상위 6개업체 선정 ↓ ○ 좌 동 ↓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적격판정 ↓ ○ 낙찰자 선정(60일내 선정)